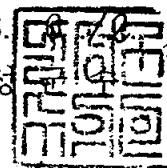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4 |
|----------|----|

제출년월일 : 2003.

제출자 : 달성군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입장료·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 달성군군립공원 관리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자연공원법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 3. 주요골자

- 기존 군립공원관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군립공원관리조례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
- 군립공원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징수 및 공원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와 관리청의 혜가를 받아 공원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함. (안 제15조, 제17조, 제20조)

### 4. 조례제정(안) :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 : 만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2장 군립공원 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담당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7조(임기) 제6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 계획의 결정

3.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4.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장)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서기는 관련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3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입장료 등

제15조(입장료) 군수는 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별표2】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제1항의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따른 기관단체 및 민간단체에 위탁계약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계약 당시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시설사용료) ①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3】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18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만6세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이상의 노인
  5.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당해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 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19조(요금계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 요율은 【별표4】와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1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혜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혜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혜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2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점용증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혜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증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5조(강제징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1】 공원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위 치                          |
|----------|------------------------------|
| 비슬산 군립공원 |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br>달성군 유가면 양리 일원 |

【별표2】 입장요금표

단위: 원

| 구 分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비 고 |
|-----|-----|--------|-----|-----|
| 개 인 | 800 | 500    | 300 |     |
| 단 체 | 600 | 400    | 200 |     |

【별표3】 시설사용료 요금표

단위: 원

| 주 차 료 | 구 分 | 당일차량  | 체류(숙박) | 비 고 |
|-------|-----|-------|--------|-----|
|       | 승용차 | 2,000 | 4,000  |     |
|       | 버스  | 3,000 | 6,000  |     |
|       | 화물차 | 2,500 | 5,000  |     |

【별표4】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표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 기준요율                                  |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건물의 약적 및 계류  | 인근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
| 2. 토지의 개간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 【별지 제1호서식】 공원 입장권

|  |   |                  |
|--|---|------------------|
| 입장권 원부<br>일련번호<br>공원명: 비슬산군립공원<br>입장요금:<br>구분:<br>발행일:<br>달성군수 | 입장권<br>일련번호<br>공원명: 비슬산군립공원<br>입장요금:<br>구분:<br>발행일:<br>달성군수 | 공원 주요 사진<br>65mm |
|--|---|------------------|

(앞면)

45mm

45mm

85mm

|  |
|--|
| 영수증<br>일련번호<br>입장요금:<br>발행일:<br>달성군수<br>“공원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다.” |
|--|

(뒷면)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단체의 구분을 표시한다
- 뒷면(앞면의 공원주요경관 사진란)은 입장권을 판매한 영수증과 공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주차권 서식

|   |   |
|---|---|
| 주차권원부<br>일련번호:<br>요금:<br>비고:<br>년 월 일<br>달성군수 인 | 주차권<br>일련번호:<br>요금:<br>비고:<br>년 월 일<br>달성군수 인 |
|---|---|

8cm

8cm

7cm

비고란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